

부산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30423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7. 3. 15.

판결 선고2017.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122,754원 및 그 중 34,498,844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2. 1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E, F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8,780,688원 및 그 중

8,624,711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피고 C, E, F은 2017. 2. 3.까지, 피고 D는 2017. 2.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51,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55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 A과 보증원금 34,000,000원, 보증처 부산은행 감전동 지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 G는 위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2013. 9. 5.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및 추가보증료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5. 9. 26.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 26. 원리금 34,498,844원(대출원금 34,000,000원+이자 498,844원)을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53,4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부터 변제일 전일까지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70,460원이다.

다. G는 2015. 6. 11.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A과 자녀 및 손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 C,

D, E, F 및 H는 G의 형제자매들이고, H는 G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라. 피고 A은 2015.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2011. 3. 7.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북부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50,006,150원(대출금 50,000,000원 및 약정이자 6,150원)을 변제한 후 그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피고 D의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부산새마을금고, 부산 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 피고 A은

35,122,754원(보증채무이행금 34,498,844원 + 채권보전비용 453,450원 + 추가보증료

170,460원) 및 그 중 위 34,498,844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0.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상속분에 따라 각 8,780,688원(위 35,122,754원×1/4)

및 그 중 각 8,624,711원(위 34,498,844원×1/4)에 대하여 위 2016.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C, E, F은 2017. 2. 3.까지, 피고 D는 2017. 2.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후에 피고 A이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6. 1. 26.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북부산새마을금고, 부산 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7. 10. 무렵 시가는 70,498,480원인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34,000,000원 및 북부산새마을금고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B은 사해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상속받은 다른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을바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의 부친 I이 경남 의령군 J 전 3,7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3. 4. 18.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은 G가 2015. 6. 11.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042조에 의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선의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어렸을 때 살던 집으로 아버지 K이 재구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인 65,0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1, 2, 을바 제1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2. 10.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2009. 4. 7. 피고 A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B은 2015. 7. 10. K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K이 위 돈 중 60,000,000원을 피고 A에게 수표로 지급한 사실, 피고 A이 위 수표 중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남 의령군 L리 일대 집성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K은 망 G와 종친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에는 망인의 처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있으며, 이후 망인의 묘지 조성에 관한 사무 처리까지 부탁받으면서 2015. 6. 15.경 망인이 운영하던 M으로부터 7,800,000원을 송금받기도 한 사실, 피고 B의 어머니 N는 피고 A이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인 위 같은 ○ 답 873m² 외 3필지에 관해 2015. 6. 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5. 6. 25.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와 N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N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부모 K, N와 피고 A, 그 남편 망 G의 관계 및 부동산 거래 사실 등은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70,557,520원인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6,150원을 공제한 20,551,37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0,551,3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55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미경

별지